

2022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22. 7.

감사위원회

1. 2021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17~'21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분야 전반에
잔존하는 비리요인을 일소하고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총 32개 기관¹⁾(투자·출연 23, 공직유관단체 9)
 - ※ 공사 자회사(6개 기관)는 모회사와 합동조사 후 위반·지적사항은 지도·감독 권한 있는 모회사에서 처분 후 조치결과 통보
- 감사기간 : '21. 9. 6.(월) ~ 10.15.(금)(기간 중 22일)
- 감사인원 : 공공감사1팀장 등 18명
 -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직원, 공익감사단 합동감사
- 감사범위 : '19.12.1.~ '20.12.31.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업무 등

3. 감사중점

- 계획수립, 공고, 전형 등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
- 기관장 등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등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 정규직 전환자의 채용 당시 규정 및 전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36	8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8)	0 0	0 0	14	0 (0)	0 (0)

1) 제외기관(3곳) : 서울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미디어재단TBS(권익위 심층조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20.12. 설립으로 미포함)

□ 총 평

- 이번 감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4차에 걸쳐 중앙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23개)과 공직유관단체(9개)를 대상으로 '19.12월부터 '20.12월말까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결과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부정청탁·부당지시,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직원들의 채용업무 미숙으로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사항 확인 소홀, 기관의 이해관계자인 인사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평가하는 등 채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음
- 총 17개 기관(공사·공단 5, 출자·출연기관 9, 공직유관단체 3)에서 3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중 업무 담당자, 감독자 등의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주의통보함
※ 공직유관단체 중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하도록 조치.(현지조치 각 1건)
- 지적사항 대부분이 담당자 업무 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 바, 시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인사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21년 채용실태 감사사례집을 활용, 채용비위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향후 채용 등 인사관리 분야는 감사 시 필수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공익 제보, 수시 모니터링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기관은 즉각적인 감사 실시를 통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현재 총 3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8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8건은 진행 중에 있음.

2. 서울여성가족재단 기관운영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개선하여 양성평등 서울 실현 기여

2. 추진내용

- 대상기관: 서울여성가족재단 및 市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감사기간: 2021.11.15.(월)~12.3.(수)(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공공감사2팀장 등 8명(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 포함)
- 감사범위: 2017.01.01.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인사·조직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 각종 용역·공사 등 계약절차 적정성 여부
- 市 위탁사업 집행 및 위탁시설 관리의 적정성 여부
- 市 유관부서의 지도·감독 적정성 여부
- 기타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6	3 (3)	1 (13)	-	-	-	-	-	-	13 (8)	-	1	2	-	-

□ 총 평

【 요 지 】

- 서울여성가족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 '21. 12. 3. 기준으로 예산액 집행기준 집행률 80%미만 사업이 전체 과제 사업 52건 중 20건(38.5%)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주요지적 사항
 - '17~'20년 정책 연구사업(연구·수탁 등) 추진소홀, 서울여성가족재단 본부간 인력구성 불균형, 입주업체 운영 부적정 등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거점형 키움센터 부진사업 관리 소홀,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부적정, 운영관리 부적정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 「공유재산법」, 「조례」 등에서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을 자체규정으로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련 규정으로 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됨.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은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고 향후 동일·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현재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4건은 조치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에 있음.

3. 물재생센터 기관운영감사

1. 감사 배경 및 목적

- 물재생센터(중랑·난지·탄천·서남)는 '11년 종합감사 이후 장기 미수감기관으로 슬러지 처리 건축·설비 관리 실태,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및 하수 처리 실태, 예산·회계 등 일반행정 운영 실태 등 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21년 연간 감사기본 계획에 따라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게 됨

2.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탄천물재생센터) 등
- 감사기간 : 2021. 6. 8. ~ 7. 16. (기간 중 29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7명 (공익감사단 3명 별도)
- 감사범위 : 2018. 1. 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업무

3. 감사 중점 사항

- 슬러지 처리 등 건축·설비 분야 관리 및 운영 실태
- 방류수질 기준 등 수질관리·환경 및 계약 분야 실태
- 예산·회계·인사·복무(채용 포함) 등 일반행정 운영 실태
- 기타 물재생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발굴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총건수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추급)					
29	5 (7)	-	-	3 (6)	-	-	-	-	-	15 (1)	-	-	11

□ 총 평

- 물재생센터는 장기 미수감기관으로서, 슬러지 처리 건축·설비 관리 실태,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및 하수 처리 실태, 예산·회계 등 일반행정 운영 실태 등 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21년 연간 감사기본 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예산·회계 등 일반행정 집행 실태와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분뇨·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그 밖의 하수처리에 있어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슬러지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받고 특정업체 약품 구매계약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하수처리 약품 등 계약분야 지적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도록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 ①유기응집제 구매계약 시, 탄천물재생센터는 '17.4월 초순경 특정업체로부터 계약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17.4.18. 「유기응집제(농축약품) 샘플 제출 요청」 결재 과정에서 ○○부 구매담당자 등에게 특정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선정할 것을 메모로 지시하였고 이후 '17.8월 ~'18.1월까지 위 특정업체와 2회 3억 2,670만원의 구매계약 체결
 - ②무기응집제 구매계약 시, 구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2단계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천물재생센터는 5천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여 '17.4월~'19.12월까지 위 특정업체와 27회 10억 9,700만원의 구매계약 체결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되고”,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일체의 부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탄천물재생센터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 사옥 건축공사를 하면서, 6개 관급자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자필로 메모지시, 3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구두 지시를 하는 등 특정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지시하여, 결국 21개 관급 자재의 납품업체가 부정하게 선정되어 총 5억 2,237만원 상당의 관급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사유로 수의계약한 업체는 직접생산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탄천물재생센터는 '20.12월부터 '21년 3월까지 특정 가구업체와 2차례 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을 위반하면서 그 계약업체가 직접생산하지 않는 유리까지 포함하여 일괄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구매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정 가구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면서 12개 품목 136점 (유리 포함시 36개 품목 306점)에 대하여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

○ 공용차량 등 공용재산 관리분야 지적사항

- 탄천물재생센터는 수탁재산인 공용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①공용차량 중 하나의 최근목적지 분석결과, 가수목원('20.5.5.), 나컨트리클럽('20.11.15.) 방문 등 공용목적외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② 보존기한 지난 '18년~'19년 차량일지를 폐기하였음에도 보존문서기록 대장에 관련 내용이 없고, 현재 보존 중이어야 할 '20년도 차량일지를 분실하는 등 문서 관리 소홀

- 사택 입주대상은 사택관리규정에 따라 탄천물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한하고, 사택 입주자는 사택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연평균 10명 정도의 임직원이 본인거주용 외에 부모, 자녀 등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였고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음

○ 하수처리 등 시설분야 지적사항

- 차집관거 보수공사 시 물막이 공사는 공사비가 저렴한 일반공법으로 가능함에도, 중량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막이 특허공법을 사용함

특히, 특허권자 중 건설업등록 특허권자는 6개 업체에 불과하며 사실상 사용가능한 특허공법은 1개 업체로서 제한적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특허공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업체 제시가격으로 계약되어 예산 낭비 초래

※ 위 6개 업체 중 건설산업정보지식시스템(키스콘)에 공사실적이 등록된 업체는 1개 업체밖에 없고, 특허공법 설치비용이 일반공법에 비해 1m 당 1.5배 이상

⇒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개선(관련자 문책요구)토록 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대상기관에서는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 (조치 완료)

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기관의 역할 기능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음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市 사회적경제담당관
- 감사기간 : 2021.10.25. ~ 11.19.(15일간)
- 감사인원 : 공공감사3팀장 등 5명(공익감사단 2명 추가 참여)
- 감사범위 : 2017년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센터 설립 및 목적 사업 추진 운영 여부
- 유사·중복 사업 추진 여부 및 민간 위탁금, 보조금 집행 적정성
- 계약·회계절차 준수 여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여부
- 기타 수탁기관 관리(지도, 감독, 평가 등) 적정성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32	7	0	0 (0)	0 (0)	1 (0)	0 (0)	0 (0)	1 (0)	21 (7)	0	0	10	0 (0)

※ 신분상조치 7명 : 기관장 경고 1명, 경고 3명, 주의 3명(병합)

※ 기관경고 7건(사회적경제담당관 1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건) 총 건수에서 제외

□ 총 평

- 이번 감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 회계, 인사, 사업 추진 등 수탁사무 관리 운영 전반과 市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2021.10.25.부터 2021.11.19. 까지 실시하였음
- 감사 결과, 사회적경제담당관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업무 중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저해, 민간위탁 사무를 관계 법령 및 규정과 달리 부적정하게 처리, 유사 중복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 운영, 사적 이해관계로 기관 운영 등 도덕적 해이, 기타 예산·회계·계약·인사·채용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32건이 확인되었음
-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 특히 센터장은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해관계인이 응시한 채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여 협약을 위반하는 등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저해한 책임이 있어 “기관장 경고” 조치 하였음
- 현재 행정상 조치 32건 중 2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7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 신분상 처분 7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음
- 담당자의 업무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업무 관련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5. 투자출연기관 비위행위 처리실태 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우리시 산하 기관의 비위행위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시민에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기여

2.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기술연구원
- 감사기간 : 2021. 11. 30.(화) ~ 12. 17.(금) (기간 중 9일간)
- 감사인원 : 공공감사1팀장 등 6명 (공익감사단 1명 포함)
- 감사범위 : '18.1.1.부터 추진한 비위행위 처리실태

3. 감사중점

- 외부감사(감사원, 서울시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적정성
- 기관 자체감사 및 내부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 적정성
-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실태
-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및 범죄사실 통보 등에 대한 처리 적정성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기관 경고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6	3	0	0 (0)	0 (0)	0 (0)			6 (3)	0	0	9	0 (0)	1	

6. 한강교량 및 자치구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내용	비고
1	비위행위 처리 관련 규정 정비 미흡	통보	<p>〈서울시립교향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벌규정에 관한 내규」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을 세부 분류된 비위 행위별로 정의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음주운전' 징계양정이 상위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서울시 및 타 공공기관에 비해 낮게 규정된 징계양정 전반 개정 방안 마련 <p>⇒ 내규 개정안 마련('22.4.22.) 및 노동조합 의견 수렴('22.5월중), '22.7월 중 이사회 개최 및 개정예정</p>	이행중
		통보	<p>〈서울시립교향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 징계 요구 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포상제한 및 징계 감경규정, 징계 외 신분상 처분과 관련한 규정, 징계처분자에 대한 처분기록 말소 규정 등 제반 규정 정비 <p>⇒ 내규 개정안 마련('22.4.22.) 및 노동조합 의견 수렴('22.5월중), '22.7월 중 이사회 개최 및 개정예정</p>	이행중
		주의	<p>〈서울시립교향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벌규정」 및 「상벌규정에 관한 내규」 등 제반 규정 정비를 소홀히 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해 서울시 및 타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징계 양정기준을 운영하도록 한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촉구 <p>⇒ 신분상 처분 완료('22.6.2.)</p>	완료
		통보	<p>〈서울문화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누락된 파면·해임, 감봉 등의 징계의 효력 및 징계 시효 경과시 신분상 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신설 등 제반 규정 정비 <p>⇒ 인사규정 개정안 초안 마련('22.5.9.) 후 노동조합과 협의중, '22.6월 중 개정 예정</p>	이행중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내용	비고
		통보	<p>〈서울기술연구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직위해제 관련 규정 개정,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시효 경과 시 신분상 처분 규정을 마련하며, 비위행위자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반 규정 정비 <p>⇒ 비위행위자 포상제한 규정 감사진행 중 개정 완료 ('21.12.29.), 직위해제, 징계부가금, 징계시효 경과시 신분상 처분규정은 개정안 마련 '22.6월 중 이사회 개최 시 개정예정</p>	이행중
2	내부직원 원고료 지급 관련 징계시효 검토 미흡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상벌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상벌규정」 및 내규에 근거 없는 감경 의결 시, 「상벌규정」 제14조에 따른 재심의 요구 등 업무 철저 <p>※ 징계시효 검토 소홀 관련자 1명 주의촉구 ⇒ 관련자 신분상 주의 처분('22.5.3.)</p>	완료
3	인사기록·보존 및 징계에 따른 고과등급 불이익 조치 소홀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벌규정」 제15조에 맞게 개인별 인사기록부에 처벌·포상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p>⇒ 개인별 인사기록부 기재 및 교육 실시 ('22.5.19.)</p>	완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상벌규정에 관한 시행내규」 제9조 제4항 개정 <p>⇒ 유관기관 사례 검토 후 개정 방안 마련중, '22.7월 개정 예정</p>	이행중
4	전 대표에 대한 명예 훼손 관련 직위해제 등 처리 부적정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의 기관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에 대해 그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등 비위행위자 인사관리 철저 <p>⇒ 형사사건 기소자 추가 직위해제('22.1.1.)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으로 '22.1.1.부터 감급 처리 ※ 감급 규정 정비소홀 기관경고</p>	완료
5	인사위원회 규정 및 내규 정비 미흡 (서울시립교향악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사항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결석 시 위원회의 구성·소집 및 의결 등 세부 사항을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하는 방안 마련 <p>⇒ 서울시 및 유관기관 인사위원회 규정 검토 후 개정 방안 마련중, '22.7월 개정 예정</p>	이행중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내용	비고
6	품의유지 위반 징계사 처리 부적정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의	○ 향후 인사위원회에서 「상벌규정」 및 내규에 근거가 없는 징계 감경 의결 시, 「상벌규정」 제14조에 따른 재심의 요구 등 업무 철저 ⇒ 인사위원회 재심의 절차 등 설명	완료
7	단원에 대한 징계효력 확보 방안 마련 (서울시립교향악단)	통보	○ 단원평가 미 실시 관련 출연기관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 처분내용을 조속히 이행토록 하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하는 등 단원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효력 확보방안 마련 ⇒ 단원평가 개선 방향성(평가 등급 및 연봉테이블 변경, 또는 기존 단원평가 최대 준용) 검토 중, '22. 하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 추진, 단원 징계 처분자에 대한 고과등급 반영 검토 예정 ※ 신규단원 정년 만 60세 제정 완료('22.4.18.) 기존 단원 정년 제정은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하여 협의중('22년 내 추진)	이행중
8	징계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위반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의	○ 향후 「인사규정」 에서 규정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포상 제외 등 불이익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 비위행위자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 관리 DB시스템 구축 예정('22.8월 완료)	이행중
		통보	○ 「인사규정」 상 신분상 처분의 말소 기록이 지나기 전 포상이 이루어진 3명에 대해 근무평정 가점 제외 등 조치 강구 ⇒ 3명에 대해 2022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해당 포상 가점 삭제·정정('22.4.6.)	완료
9	징계의결 미요구·감경 기준 운영 부적정 (서울문화재단)	통보	○ 자체 규정에 맞지 않게 자체 공문으로 자의적 감경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인사 징계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의 재발 방지 방안 강구 ⇒ '22년 복무근태 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 시 지적사항 반영, '서울문화재단 복무근태 매뉴얼' 정비('22.2.4.)	완료

1. 감사배경 및 목적

- 한강교량 및 주요 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 도출로 안전 취약요인 시정조치
-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 안전총괄실(교량안전과), 구로구(도로,치수 분야 등 사업부서)
- 감사기간 : 2021. 9. 6. ~ 10. 14.(기간 중 17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한강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 '18. 9. 1. 이후 준공 또는 계약된 (시비)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 감사중점

- 한강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적정성
-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실시와 결과 처리 적정성
- 시설공사의 설계·발주·시공·하자관리 적정성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5	16	-			3			3	7 (16)			5		

□ 총 평

○ 안전총괄실(한강교량) 및 구로구(주요 시설물)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 건설공사 설계·시공·하자관리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 관행 답습, 관련 법규정 미숙지 등의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개선 조치함.
- 감사 지적된 총 10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 15건, 신분상 조치 16건(훈계 등), 관련업체 제재 6건(고발 2, 징계요구 1, 과태료 3) 조치 요구함.

○ 주요 지적사항

- 한강교량 수중구조물(우물통·기초) 안전점검 및 하자검사를 관련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하지 않고 5년 주기로 변경 시행, 자체 안전점검자 및 수중점검용역 잠수부 자격 미달 등 안전관리 소홀
- 한강교량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진단장비(반발경도측정기 등 10종) 정밀도 확보를 위한 검·교정을 하지 않아 안전진단 결과 신뢰도 저하
- 하도급 계약은 10일 이내 발주청 통보하여야 하나, 총 8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최대 227일까지 지연 통보
- 도시재생 건축물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구조안전(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설계 및 시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관련자 신분상 조치(훈계 등 16명) 완료하고, 업체 제재 6건은 경찰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제재 절차 진행 중임.
-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및 개선대책 마련·시행 중임.

□ 총 평

-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 대금·임금 등 체불예방을 위해 서울시 및 소속기관, 자치구 발주 14개 공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등)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지급, 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인력 및 계약관리 등 분야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승인 없이 동일 업종 하도급 및 계약사항 미통보 1건과
-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노무비 지연지급,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안내문 미게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등 다수의 하도급 관리 소홀이 지적됨

계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노무비 지연지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기재사항 누락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안내문 미게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기타
400건 (13개소)	234건 (6개소)	56건 (4개소)	26건 (1개소)	72건 (5개소)	7건 (7개소)	2건 (2개소)	3건 (3개소)

※ 기타(3개소 / 3건)는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하도급계약 시 발주청 사전 미승인 : 1건
-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 구분기재 누락 : 1건
- 공사구간 위험수목 제거 미흡 및 사면 보강 필요 : 1건

□ 조치사항

- 지적사항 30건 중 조치완료 29건, 조치 중 1건이며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설 하도급 분야 점검 주요 지적사례' 안내

8. 자치구 건설공사 유지관리실태 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자치구의 건설공사 시공·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소를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은평구·노원구·양천구·강남구(4개 기관)
- 감사기간 : 2021.9.8.~10.21.(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3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18.1.1. 이후 준공 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 실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진행중인 건설 공사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 적정성
- 지반 굴토 공사장 흠막이 가시설, 계측 등 안전관리 적정성
- 하수도관 접합부 시공상태 및 되메움 구간 다짐 적정성
- 완료된 공사의 시공하자 및 하자보수 관리 적정성
- 공사 완료 후 주변 도로 침하, 균열 등 변위 여부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7	11	70,662	-	-	1 70,662	-	1 70,662	3 (11)	1		2	-	-

※ 주의인원 11명 중 가과 팀장(◇◇◇)은 퇴직으로 미처분

□ 총 평

- 자치구 4개 기관에 대한 2018.1.1.부터 현재까지 준공 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설계·시공분야, 예산낭비 사례, 하도급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발주청과 수급인의 건설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안전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준수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피난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용역을 준공하는 등 실무담당자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 화재 등 안전 사고발생시 시설이용자들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